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55호 2018. 05. 31.(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8-65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2
- 사천시 공고 제2018-681호 국내·국외 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3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555호(2)

공 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 2018 - 65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 허 번 호	사천양식 제 35 호	
면 허 면 적	10.0 ha	
어 업 의 종 류	패류양식	
어 업 의 방 법	바닥식	
어 장 의 위 치	사천시 신수도 지선	
포획·채취·양식물	패류	
어 업 의 시 기	연 중	
면 허 기 간	2008. 6. 15. ~ 2018. 6. 14.	
연 장 허 가 기 간	2018. 6. 15. ~ 2028. 6. 14.	
허가일자 및 번호	2018. 5. 28. 제 2018-2 호	
어업권자	주 소	경남 사천시 신수동
	성 명	신수도어촌계

2018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555호(3)

공 고

사천시 공고 제 2018-681호

국내, 국외 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국내여행업	2013-2	(주)힐링투어	유*진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9-12
국외여행업	2013-2	(주)힐링투어	유*진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89-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위반(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시정기한 2018. 6. 22.(금)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555호(4)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18. 5. 31. ~ 2018. 06. 15.(15일간)

7. 게시장소 : 사천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천시 관보

8.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 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청 문화관광과(055-831-2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8

사 천 시 장